

위법계약 해지 요구서

본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(위법계약의 해지)에 따라 하나생명보험과 체결한 금융상품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고객 정보

성명	계약자와 관계 (본인/피보험자 등)	생년월일	주소

2. 기재 사항

① 금융상품명 (필수)	※ 증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함께 기재
② 상품 내용	계약체결일 / 월보험료 등 상품명을 모를 경우 기재
③ 법 위반 사실 (필수)	
④ 준수의무 위반 (선택)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성 원칙(법 제17조 제3항)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정성 원칙(법 제18조 제2항) <input type="checkbox"/> 설명의무(법 제19조 제1항·3항) <input type="checkbox"/> 불공정영업행위(법 제20조 제1항)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당권유금지(법 제21조)

3.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·합리적인 근거

내용 (필수)	※ 필요시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 별도 첨부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■ 본인은 상기와 같이 기재하여 제공한 내용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.

1. 귀하께서 회사에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,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위법계약해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. 회사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“정당한 사유”가 있는 경우 귀하의 금융상품 계약의 해지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20 ____ 년 ____ 월 ____ 일

■ 보내실곳

045-38
서울시 중구 을지로 66, 하나생명 13층 소비자보호팀
Fax : 02-3709-8626

금융상품 계약자	성명 :	(서명/인)
(법인의 경우)대리인	성명 :	(서명/인)
친권자 / 후견인	성명 :	(서명/인)
	성명 :	(서명/인)